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24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요구서류 제출

2025. 4.

법 제 처

- 목 차 -

I. 김기표 위원

1.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 2
2.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 2

II. 박균택 위원

1.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법률 검토의견 등을 보고 또는 건의한 현황 4
2. 최근 1년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고위공직자의 투자 행위 관련 외부 법률 자문 또는 연구 용역 의뢰 내역 및 자문의견서(결과보고서) 사본 4

Ⅲ. 박지원 위원

1.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2022.5.13.) 및 취임 당시 제출한 당적 증명서 등 당적 관련 증명서류 일체	6
2. 이완규 법제처장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결재서류 목록 일체	7
3.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른바 ‘안가회동’ 당시 처장이 사용한 관용차량 사용일지	8
4. 이완규 법제처장의 최근 3년간 핸드폰 변경내역	8
5.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재판관 자격과 관련한 법 조항의 목적과 취지 설명	9
6.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른바 ‘안가회동’ 이후 핸드폰 교체이유 설명할 것	10

Ⅳ. 서영교 위원

1. 이완규 법제처장 당적 여부(기간, 소속정당)	12
2. 25.2.4 처장 발언 관련 법제처 공식 입장 여부	12
- “헌재에서 위법 판단하지 않을 것” 등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국회가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3. 25.3.4 국무회의 직전 간담회 관련 자료요구	13
- 법무부는 해당 간담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서류 존재를 인정, 법제처가 동일 간담회 당시 작성한 문서	
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법제처 입장여부	13
- 25.3.4, 법제처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임명 시기를 특정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임명보류 입장을 이완규 법제처장이 간담회에서 밝힘. 이에 대한 사실여부	
5.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윤석열 연락 여부	14
6. 비상계엄 이후 기존 휴대전화의 보관 여부	14
7. 비상계엄 이후 안가회동 이유, 목적	15
8.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자문 요청 여부/자문 결과(해당문서)	15
9. 비화폰/유심칩,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로부터 수령여부	15
10.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 법제처 행동 매뉴얼	16
11. 법제처의 포고령 및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	16

V. 장경태 위원

1.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내부 법률 판단을 한 문건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일체 제출할 것.	18
2.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법무법인 또는 유관기관에 법률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기관(로펌) / 답변문서 등 자료 일체 제출할 것	18

김기표 위원

1.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
2.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진성훈 사무관 ☎ 044-200-6711 >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기본법」 제40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상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관련된 유권해석 자료는 없음.

박균택 위원

1.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법률 검토의견 등을 보고 또는 건의한 현황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1년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고위공직자의 투자 행위 관련 외부 법률 자문 또는 연구 용역 의뢰 내역 및 자문의견서(결과보고서) 사본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해당사항 없음

박지원 위원

1.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2022.5.13.) 및 취임 당시 제출한 당적
증명서 등 당적 관련 증명서류 일체

<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승권 주무관 ☎ 044-200-6530 >

☐ 해당사항 없음

2. 이완규 법제처장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결재서류 목록 일체

- < 담당자: 대변인실 임동혁 주무관 ☎ 044-200-6518 >
- < 담당자: 운영지원과 김진석 주무관 ☎ 044-200-6524 >
-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소훈 주무관 ☎ 044-200-6546 >
- < 담당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윤성용 주무관 ☎ 044-200-6559 >
- < 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실 강유주 주무관 ☎ 044-200-6792 >
- < 담당자: 법령데이터혁신팀 김영지 주무관 ☎ 044-200-6797 >
- < 담당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문지현 주무관 ☎ 044-200-6823 >
- < 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 전준수 주무관 ☎ 044-200-6564 >
- < 담당자: 법령정비과 박선영 주무관 ☎ 044-200-6575 >
- < 담당자: 법제혁신지원과 권혜진 주무관 ☎ 044-200-6844 >
- < 담당자: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하정운 주무관 ☎ 044-200-6737 >
- < 담당자: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윤현정 주무관 ☎ 044-200-6808 >
- < 담당자: 행정법제국 박예지 사무관 ☎ 044-200-6619 >
- < 담당자: 경제법제국 이형훈 사무관 ☎ 044-200-6634 >
- < 담당자: 사회문화법제국 이다은 사무관 ☎ 044-200-6689 >
-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권다은 주무관 ☎ 044-200-6708 >
- < 담당자: 법제지원총괄과 김효정 주무관 ☎ 044-200-6539 >
- < 담당자: 자치법제지원과 김민정 주무관 ☎ 044-200-6758 >
- < 담당자: 법제교육과 송영인 주무관 ☎ 041-924-1703 >
- < 담당자: 행정규칙심사정비팀 박연이 주무관 ☎ 044-200-6940 >
- < 담당자: 법령용어순화팀 이진아 주무관 ☎ 044-200-6857 >

□ 별첨 2 참조

3.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른바 ‘안가회동’ 당시 처장이 사용한 관용 차량 사용일지

<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한나 주무관 ☎ 044-200-6527 >

☐ 관용차량 사용일지

- 전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운행 일지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4. 이완규 법제처장의 최근 3년간 핸드폰 변경내역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법제처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

5.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재판관 자격과 관련한 법 조항의 목적과 취지 설명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진성훈 사무관 ☎ 044-200-6711 >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그런데, 법제처 법령해석업무는 법 집행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 의견을 전제로, 법령해석과 관련된 ‘행정부 내부’의 견해를 통일해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법부에 속하는 헌법기관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행정부 내의 2차적·보충적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는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우뿐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신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게 항상 동일한 답변을 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른바 ‘안가회동’ 이후 핸드폰 교체이유
설명할 것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43 >

☐ 고발되어 있는 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1. 이완규 법제처장 당적 여부(기간, 소속정당)

< 담당자: 운영지원과 이승권 주무관 ☎ 044-200-6530 >

☐ 국회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22. 1. 1. ~ '25. 4. 8. 기간 동안 국민 의힘 당적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별첨 참조)

2. 25.2.4. 처장 발언 관련 법제처 공식 입장 여부

- “헌재에서 위법 판단하지 않을 것” 등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국회가 추천했다고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43 >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함.

3. 25.3.4 국무회의 직전 간담회 관련 자료요구

- 법무부는 해당 간담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서류 존재를 인정, 법제처가 동일 간담회 당시 작성한 문서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43 >

☐ 해당사항 없음

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법제처 입장여부

- 25.3.4, 법제처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임명 시기를 특정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임명보류 입장을 이완규 법체저장이 간담회에서 밝힘. 이에 대한 사실여부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43 >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함.

5.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윤석열 연락 여부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법제처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

6. 비상계엄 이후 기존 휴대전화의 보관 여부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고발되어 있는 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비상계엄 이후 안가회동 이유, 목적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43 >

☐ 고발되어 있는 사안으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자문 요청 여부/자문 결과

< 담당자: 법령해석총괄과 진성훈 사무관 ☎ 044-200-6711 >

☐ 해당사항 없음

9. 비화폰/유심칩,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로부터 수령 여부

< 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실 윤성윤 주무관 ☎ 044-200-6762 >

☐ 해당사항 없음

10.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 법제처 행동 매뉴얼

< 담당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오영환 보좌관 ☎ 044-200-0000 >

☐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처의 포고령 및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일수 서기관 ☎ 044-200-6543 >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함.

장경태 위원

1.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내부 법률 판단을 한 문건이 있는지?

1-1. 있다면 자료 일체 제출할 것.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해당사항 없음

2.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법무법인 또는 유관기관에 법률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

2-1. 있다면 기관(로펌) / 답변문서 등 자료 일체 제출할 것

<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 044-200-6545 >

☐ 해당사항 없음